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11. 26(화) 10:00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20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3.

2. 제안이유

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규정 추가(안 제2조의2제1항제18호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 - 2)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신설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- 1)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규정 추가(안 제2조의2제1항제18호 신설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제4조(지원사업 등)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
<개정 2016.12.30., 2024.10.2.>

1.~3. (생략)

4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

5.~7.(생략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우리구 조례의 지원 근거에 따라 의사자 유족,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4. 7. 24.] [법률 제20106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1. “구조행위”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·적극적 행위를 말한다.
2. “의사자(義死者)”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(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의상자(義傷者)”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4. “의사상자”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.
5. “의사자유족”이란 의사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자녀, 부모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.
6. “의상자가족”이란 의상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.